

# 2011년도 상반기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

## 공 개 취 지

- 우리시에서는 시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열린 시정의 구현을 위하여 시민들에게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공개하는 제도를 도입·시행하고 있습니다.
- 이에 따라 2011년도 하반기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개하고 앞으로도 항상 투명하고 효율적인 열린 시정을 펼쳐 나가고자 합니다.

## 시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

□ 총괄 (2011. 1. 1 ~ 6. 30)

(단위 : 천원)

계			기관운영 업무추진비			시책추진 업무추진비		
예산액	집행액	%	예산액	집행액	%	예산액	집행액	%
250,400	99,078	39.6	79,200	43,201	54.5	171,200	55,877	32.6

## □ 예산규모 및 내역설명

- 기관운영업무추진비,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『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에 관한 규정』에 따라 편성됩니다.  
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에 의한 「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」에 따라 집행하며,
-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, 연간 79,200천원으로 2011년 1월부터 6월말까지 **43,201천원 (54.5%)**을 사용하였으며,
-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, 연간 171,200천원으로 2011년 1월부터 6월말까지 **55,877천원 (32.6%)**을 사용하였습니다.

## □ 201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장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.

- ① 불우소외계층 및 이주민에 대한 격려 및 지원
- ② 시책 또는 지역 홍보
- ③ 학술·문화예술·체육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격려 및 지원
- ④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·간담회·행사
- ⑤ 현업(현장)부서 근무자에 대한 격려 및 지원
- ⑥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
- ⑦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
- ⑧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인 경비
- ⑨ 그 밖에 조례 또는 법령에 미리 정하여진 경우로서 예산 집행이 필요한 경우